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만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6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4일

발 의 자 : 임만균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경우, 김기대, 김인제,
김재형, 김정태, 김제리,
김창원, 김태수, 김희걸,
노승재, 박기열, 박기재,
박상구, 박순규, 송도호,
송명화, 송아량, 양민규,
이경선, 이상훈, 이정인,
이준형, 장상기, 전석기,
정재웅, 홍성룡, 황규복
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-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의 층수규제를 완화하여 저층주거지 주거 환경개선을 촉진하고 주택공급을 통한 집값안정에 기여하고자 함.
- 도시계획조례(제7093호, 2019. 3. 28.) 부칙 제2조에 따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 및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주거 용적률 상향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내 아파트의 층수완화시 공공기여 삭제
- 나. 조례 개정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(부칙 개정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제1호다목 중 “평균층수 13층이하. 다만, 사업계획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평균층수 13층 이하.”를 “평균층수 13층이하”로 한다.

부칙(제7093호, 2019. 3. 28.) 제2호 본문 중 “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”을 “최초 개정 조례(제7093호, 2019. 3. 28.)의 시행일부터 6년이 되는 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8조(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영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	<p>제28조(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(현행과 같음)</p>
<p>1.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·고시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, 시공동위원회, 시도시재정비위원회, 시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시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등 시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.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
<p>가. ~ 나. (생략)</p>	<p>가.~나. (현행과 같음)</p>
<p>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: 평균층수 <u>7층 이하</u>.</p>	<p>다 ----- -----</p>

<p><u>다만, 사업계획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평균층수 13층 이하.</u></p>	<p>----- : ---- <u>13층 이하.</u></p>
<p>부칙(제7093호, 2019. 3. 28.) 제2조(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변경 및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변경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) 제55조제22항 및 별표 3(제1호나목을 제외한다)의 개정 규정은 <u>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</u> 건축허가를 신청(건축허가가 의제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)하는 경우까지 적용한다.</p>	<p>부칙 제2조(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변경 및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변경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) ----- ----- ----- <u>최초 개정 조례(제7093호, 2019. 3. 28.)의 시행일부터 6년이 되는 날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